

	교수회 규정	문서번호		5-1-13	
		제정일		2010. 03. 01.	
		개정일		2020. 11. 01.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회의) ① 교수회는 총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영한다.

② 교수회의 안건 중 심의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교무처장 심의로서 갈음할 수 있다.

제4조(소집 및 의결)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, 총장이 부재시에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교수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5조(심의사항) ①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 및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
2.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조(업무관리) 교수회의는 교무처에서 그 업무를 관장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교수회 규정	문서번호	5-1-13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